

생산일 : 2003. 8. 22

報 道 資 料

이 資料는 2003년 8월 23일 朝刊부터
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題 目 : 消費者保護法施行令 改正案 立法豫告

主要内容

☐ 소비자보호법 개정('03.7.29) 및 소비생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
기본권익을 보호하고,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소비자
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

☐ 주요 개정내용

- 민간 소비자단체가 재정부 등에 등록신청시, 제출하는 자료로서 등록
단체의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년이상의 활동실적을 제출
토록 하고,
 - 「물품 및 용역」에 대한 상담·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
업무(소비자보호법 제18조)를 수행하는 등록단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
위해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는 특정분야를 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.
- 전문성이 요구되어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
분야로 금융·의료·환경·저작권 등을 규정함.
- 내실있는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심의
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소비자보호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획예산처
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추가(13개부처 장관) 함.
- 소비자의 중복 피해구제 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이
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를 신청받는 경우 다른 피해구제 기관에 대한
피해구제 신청접수 여부를 확인토록 함.

☐ 시 행 : 2003. 10월말 예정

붙 임 : 1.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 1부
2. 소비자단체 등록 현황 1부.

報道資料 生産課 : 소비자정책과 과 장 신윤수, 사무관 김종한

TEL(직)503-9060~1 (교)2110-2066~7

財政經濟部 公報官

消費者保護法施行令 改正案

1. 改正 事由

- 소비자보호법 개정('03. 7. 29 공포) 및 소비생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간 소비자보호시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,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함.

2. 主要 改正內容

○ 소비자단체 등록요건 보완

- 소비자단체 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년이상의 소비자보호 활동실적을 제출토록 하고,
- 「물품 및 용역」에 대한 상담·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고려하여 등록을 희망하는 소비자단체는 특정분야를 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.

○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제외분야

-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은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금융·의료·환경·저작권 등 제외분야를 명시하고,
 -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절차 등도 규정
- * 금융·의료·환경·저작권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상담·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는 가능.

○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

- 소비생활 여건변화에 따라 소비자보호시책을 내실있게 수립·시행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토록 함.

○ 중복 피해구제 방지

- 소비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구제를 신청받는 경우 다른 피해구제 기관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.

○ 전자문서 활용근거 마련

- 기업의 민원처리가 용이하도록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물품 등의 결함정보 보고와 위해물품 등에 대한 시정·권고 및 수락여부 통지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.

* 기업지원을 위한 전자문서 시행(기업지원통합시스템 구축) : 산자부

○ 분쟁조정 신청 및 피신청인 경정

- 소비자보호원이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또는 합의권고 기관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등을 제출토록하고,
- 피신청인이 잘못 지정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이 피신청인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함.

* 소비자보호원의 자체규정을 시행령으로 법제화

○ 분쟁조정 기각 결정사유를 명시

-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,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, 신청인이 사실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결정할 수 있도록 함.

* 소비자보호원의 자체규정을 시행령으로 법제화

3. 向後 推進計劃

-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: 8 ~ 9월
-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: 9월중
-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: 10월중
- 개정령 공포·시행 : 10월중

(불 임 1)

消費者保護法 改正法律

제19조의2(자율적 분쟁조정) ①소비자단체협의체(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)는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.

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 신설]

제22조제1항중 “20인이내” 를 “25인이내” 로 한다.

(불 임 2)

소비자단체 등록 현황

2003. 8 현재

단 체 명	대 표 자	등 록 연 월	비 고
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	이 윤 자	1987. 7	
한국여성단체협의회	은 방 희	”	
대한YWCA연합회	이 행 자	”	
대한주부클럽연합회	김 천 주	”	
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 모임	김 재 옥	”	
전국주부교실중앙회	이 윤 자	”	
한국소비자연맹	정 광 모	”	
한국소비자교육원	전 성 자	”	
한국YMCA전국연맹	이 학 영	”	
한국소비생활연구원	김 연 화	1995. 6	
녹색소비자연대	양 지 원	1997. 6	